

Hansun Brief

발행일: 2018년 4월 16일(통권55호) / 발행인: 박재완 / 발행처: 한반도선진화재단 / 서울 중구 퇴계로 197, 407호 / 전화: 02-2275-8391 / email: hansun@hansun.org / www.hansun.org 

국가핵심기술 영업비밀 공개는 국가경쟁력 훼손 행위

최 승 재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요약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면 유해인자에 대한 보고서는 당연히 제공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해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해서 안된다. 그러나 보고서의 제공은 그 목적으로 국한되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근로자들을 유해인자로부터 막기 위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보고서는 그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당해 정보만으로도 영업비밀이고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전문적인 식견을 통해서 영업비밀을 알 수 있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무방비 상태로 공개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국가핵심산업인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을 우리 스스로 훼손하는 자해행위이다.

관련 사건의 전개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등 소위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 공개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보고서 안에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는 작업환경측정 등을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9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진단을 받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을 통해서 유해화학물질 유해인자가 되는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규율대상 기업으로 하여 이들 사업주들이 6개월마다 전문자격을 갖춘 외부기관을 통해 작업환경을 측정하여 고용노동부에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보고서에는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실태와 단위작업 장소별 유해인자(유해물질) 측정 위치도, 유해인자 측정결과, 노동자들의 유해인자 노출시간 등이 종합적으로 기재된다. 해당 사업장은 결과보고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는 결과보고서를 부분공개 하여 왔다. 그런데 2018. 2. 1. 대전고등법원(2017누10874판결)은 한국산업보건학회의 사실조치 결과에 근거하여 단위작업장소별 유해인자의 측정위치도(측정장소)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경영상이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판결을 보면 피고가 다투지 않아 다툼이 없는 사실이라고 판시되어 있으나 영업상 비밀이 다투지 않는다고 비밀이 아닌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니 영업비밀성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대전고등법원은 근로자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공개를 명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 이 판결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상고를 포기하였다.

이와 비교하여 2017. 10. 16. 서울고등법원(2017누41988판결)은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마땅히 공개하였어야 함에도 피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 전부에 대해서 비공개처분을 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특별감독보고서는 특별감독의 결과를 보고하는 문서이므로 경영상이나 영업상 비밀이 원칙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붙임 서류 중의 일부는 경영상이나 영업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의 화성 및 기흥사업장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기업에 비하여 경영상·영업상 비밀의 해당여부를 보다 넓게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도 인정하고 있다. 법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 각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더라도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보부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삼성전자의 비밀유지를 위한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쉽게 분리할 수 있는 정보는 분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2018. 2. 14. 법원 판결에 따라 관련 지침을 개정하겠다고면서 그리고 결과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런 방침에 따라서 3. 6. 고용노동부 지침에 결과보고서를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3. 12. 고용노동부는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 결과보고서의 공개를 결정하였다. 또 3. 19. 삼성전자 구미공장의 결과보고서의 공개도 결정하였다. 그리고 3. 20.에는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 공장의 결과보고서의 공개도 결정하였다.

고용노동부가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자, 3. 27. 삼성디스플레이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3. 30. 삼성전자는 수원지방법원에 정보공개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심판도 제기하였다.

국가핵심산업인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영업비밀을 일반적으로 공개해서는 안된다.

필자는 디스플레이 분야를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많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LCD, PDP, 유기이엘(OLED) 등 우리나라의 디스플레이 산업의 기술발전 과정에 관여하였다. 우리기업들은 전세계적으로 디스플레이산업의 최강자였던 일본을 제치고 디스플레이 강국이 되었지만 이제 중국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다. 2009년 중국의 LCD TV 시장의 급성장에 맞추어 현지에 공장을 신설하고자 하였을 때에도 정부는 TFT LCD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라는 점을 들어서 국가핵심기술의 보완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기술수출을 승인하였다.

정보공개법도 경영상·기술상 영업비밀을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 의한 공개를 명하더라도 경영상·기술상 영업비밀과의 분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이들을 분리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이 사건 보고서의 작성을 명하는 것은 유해인자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권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며, 그렇다면 그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목적으로 보고서는 사용되어야 한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성이 제기되면 이 사건 보고서는 당연히 제공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경영상·기술상 영업비밀을 이유로 해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해서는 안된다. 민사소송법은 영업비밀을 보호하면서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통제하에서 이루어지는 절차 진행에 대해서 해당 사업주나 관련정부부처는 자료제공을 회피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런 필요 이상의 정보를 당해 근로자의 보호에 필요한 부분 이상으로 공개하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며, 관련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고 집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사

업주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보고서를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관련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당해 행정기관이 자신들의 영업비밀을 공무상으로 지켜 줄 것으로 믿고 제공하는 것이며, 당해 법령이 요구하는 목적 범위내에서 사용될 것이라고 신뢰하고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범위 외의 사용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반드시 막아야 할 법치행정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서울고등법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영업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할 사업주의 이익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고, 전세계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는 한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이익은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생존을 위해서 지켜야 할 이익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영업비밀 등을 다루는 필자로서도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아야 판단할 수 있지만, 이 사건 보고서에 기재된 일부 내용, 예를 들어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상태나 측정위치도 등은 이런 정보만으로도 영업비밀이고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전문적인 식견을 통해서 영업비밀을 알 수 있는 정보들로 보인다. 만일 우리나라의 경쟁국에서 이런 정보를 직접, 또는 국내의 제3자를 통해서 입수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끔찍하다. 이런 정보는 해당 기업들의 내부자라고 하더라도 업무관련자가 아니면 접근할 수 없는 비밀정보이다. 지금은 디스플레이 업계의 문제라도 나중에 다른 산업분야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우리 기업들은 사실상 영업비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국가핵심산업인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을 우리 스스로 훼손해서는 안된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 문자후원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